



명쾌한 수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링크, 게시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될까요?

〈사건개요〉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총 450회에 걸쳐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업로드하며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였습니다.

피고인의 ‘다시보기 링크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는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이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한 이용자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까요?

관련 법률(공중송신권)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공중 송신’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자의 공중 송신권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므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고의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의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기만 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 방조: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범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피고인이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는 저작물의 웹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으며,
☞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어 있는 사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 후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정범의 범죄행위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판례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중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판례는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별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

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